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0

발의연월일: 2024. 6. 11.

발 의 자: 박대출·박성민·최형두

김정재 · 강민국 · 박정하

윤한홍 · 정점식 · 김태호

윤영석 · 신성범 · 이인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」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,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,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%를, 그 다음 2개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%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 21조의36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

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2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장의12(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12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

제121조의36(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홍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) ①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44조에따라 지정된 투자진홍지구(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37에서 "투자진홍지구"라 한다)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, 우주개발산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과 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도는 소득세의 100분의 50

-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-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(이하 이조에서 "감면한도"라 한다)로 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
- 2.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 사업장"이라 한다)의 상시근로자 수 × 1천500만원
-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.
-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

- 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1.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. 다만, 법인의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감면대상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
-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121조의37(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)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6에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.
 - 1.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45조에 따라 투자진 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
 - 2. 해당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우주항공복합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 면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/u>	제5장의12 우주항공복합도시 지
	원을 위한 조세특례
<u> <신 설></u>	제121조의36(우주항공복합도시
	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
	법인세 등의 감면) ① 「우주
	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
	별법」 제44조에 따라 지정된
	투자진흥지구(이하 이 조 및
	제121조의37에서 "투자진흥지
	<u>구"라 한다)에 2028년 12월 31</u>
	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
	주산업,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
	령령으로 정하는 사업(이하 이
	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이라 한
	다)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
	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
	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
	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
	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
	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
	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
	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
	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의 개시

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 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.

-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 도(이하 이 조에서 "감면한도" 라 한다)로 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50
- 2.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
 구 사업장(이하 이 조에서
 "감면대상사업장"이라 한다)
 의 상시근로자 수 × 1천500
 만원
-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

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.

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 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.

-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의 범위,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

<u><신</u>설>

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- 1.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. 다만, 법인의 합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감면대상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경우
- ①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제121조의37(우주항공복합도시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)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6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.
 - 1. 「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45조에 따라

<u>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</u> <u>된 경우</u>

- 2. 해당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